

01



한국과 중국의 과세제도

I. 중국의 증치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증치세는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용역, 서비스 및 재화를 공급 또는 제공할 경우에 과세된다. 경내라 함은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경내에 있는 경우 또는 판매하는 부동산이 경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세대상에 대한 요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재화 공급

재화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며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서비스 제공

서비스는 크게 교통운수업, 건축업, 우편업, 통신업, 금융업, 현대서비스업 및 생활서비스 7가지를 포함하며, 서비스 종류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다.

다. 용역 제공

용역은 유상으로 가공·수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공은 위탁자가 원료 및 주요 재료를 공급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재화를 제조하여 위탁자에게 공급하며, 위탁자로부터 가공비를 수취하고 가공된 재화의 소유권을 위탁자가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리란 수탁자가 손상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재화를 수리하여 원래의 상태와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혼합판매행위와 겸영행위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의 제공이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의 판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기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서비스의 공급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면 에어컨 생산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어컨을 판매하고 고객에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혼합판매행위에 속하며 이 경우에는 에어컨 판매 행위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겸영행위란 납세자가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업무를 동시에 경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겸영행위의 경우, 과세행위에 따라 매출액을 구분하여 확정하고 상응한 세율 또는 징수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마. 간주매출

다음의 행위는 재화의 공급 및 서비스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 ① 재화를 타인에게 인도하여 대리판매하거나 대리판매 재화를 판매할 경우
- ② 각기 다른 현(시)에 설립된 두개 이상의 기구를 설치하고 통합결산을 실행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한 기구에서 다른 한 기구로 이송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③ 자체생산 또는 위탁가공한 재화를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경우(외부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상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전출 처리)
- ④ 자체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재화를 기타 단위 또는 개인사업자에 투자, 배분, 무상증정하는 경우
- ⑤ 단위 또는 개인에게 과세대상 서비스를 무상 판매하거나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경우(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납세의무자

가. 일반규정

중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의 납세자이고 경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내에 경영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내 대리인 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

중국의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한다. 즉 납세의무자의 회계처리가 건전한지 여부와 경영규모의 대소를 기준으로 증치세의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로 구분한다.

2018년 5월 1일부터 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속 12개월(월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또는 연속 4개 분기(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전체 과세대상 매출액이 500만위안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가 되고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가 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규모가 500만위안에 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 제공이 가능할 경우 관할 세무국에 일반납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은 증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 일반납세자는 소규모납세자로 전환하지 못한다.

다.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의 계산방법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에는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전체 증치세 과세대상 매출액(면세 매출액과 세무기관의 대리발급세금계산서 매출액 포함)과 조사추징 매출액, 납세평가조정 매출액을 포함한다.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 계산 시 아래 두 가지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1) 서비스·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이하 ‘과세대상행위’)을 판매하고 공제항목이 있는 납세자는 그 과세대상행위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을 미공제 전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2) 납세자에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무형자산을 판매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한 매출액은 과세대상행위의 연간 과세대상 매출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라. 일반납세자 등록 관리

납세자는 연속 12개월 과세대상 매출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한 월(또는 분기)의 소속 신

고기한이 만료된 후 15일 내에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국은 규정 기한 만료 후 5일 내에 <세무사항통지서>를 작성하고 납세자에게 5일 내에 관할 세무국에 등록할 것을 통지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부터 매출액과 증치세 세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자가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한다.

3. 세율과 징수율

가. 일반납세자 적용 세율

일반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의 세율은 기본 세율 13%, 9%, 6% 및 수출 적용 세율 0%로 구분된다.

각 세율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적용범위
일반계세방법	13%	화물(지정 화물 제외) 판매 혹은 수입, 유형동산 임대서비스, 용역 판매
	9%	교통운송 서비스, 우편 서비스, 기초통신 서비스, 건축 서비스, 부동산 임대 서비스,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지정 화물*의 판매 혹은 수입
	6%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 금융서비스, 현대 서비스(임대 제외), 생활 서비스, 무형자산 판매(토지사용권 양도 제외)
	0%	화물 수출(국무원 별도 규정 제외), 경내 회사와 개인이 판매한 국무원 규정범위 내의 서비스와 무형자산
간이계세방법 (매입세액 공제 불가)	5%	부동산 판매, 부동산 운용리스, 토지사용권 양도, 노무파견 서비스, 부동산 금융리스, 인력자원 아웃소싱 서비스. 공로 요금 수취
	3%	특정 화물의 구입과 판매, 서비스업에 대하여 일반납세자가 간이방법을 채택하여 증치세 납부
	3%→2%	특정 경우의 유형자산, 중고 화물 판매

*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항목:

- ① 농산물, 식용 식물유, 식용 소금
- ② 자연수, 열기, 냉기, 온수, 가스, 석유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ME), 메탄가스, 가정용석탄제품
- ③ 도서, 신문, 잡지, 음향 영상제품, 전자출판
- ④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박막
- 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나. 소규모납세자 적용 징수율

소규모납세자에게 적용하는 증치세의 징수율은 3%, 5%이다.

적용범위	징수율
1. 기본세율	3%
2.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경우	5%

다. 혼합판매행위의 세율 적용

혼합판매행위의 세율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증치세를 징수하면 재화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서비스의 공급으로 증치세를 징수하면 해당 서비스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업은 서비스의 공급에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라. 겸영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

납세의무자가 세율이 다른 재화의 공급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다른 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공급가액을 분리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부터 적용한다.

4. 납부세액의 계산

가. 일반납세자

일반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당기 매출세액} - \text{당기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매출액과 적용 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증치세 세액을 말한다. 매입세액은 납세자가 재화,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구매할 때 지불하거나 부담하는 세액을 말하여 매입세액은 판매자가 수취한 매출세액과 서로 대응된다.

일반납세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가격을 정한 경우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출한다.

$$\text{공급가액} = \text{세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 (1+\text{세율})$$

(1) 매출세액의 확정

1) 일반 매출액의 확정

매출액은 과세대상행위에 대하여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취하는 전부의 대금과 가격 외비용(즉 가격외 수입, 예를 들면 위약금, 체납금, 배상금, 연체이자,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등)을 말한다.

2) 간주매출액의 확정

- ① 납세자의 최근 시기 동종 재화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의 평균 판매가격
- ② 기타 납세자의 최근 동종 재화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의 평균 판매가격
- ③ 동종 재화 또는 서비스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3) 특수 판매방식 하의 매출액의 확정

① 매출에누리 판매방식(折扣销售)

납세의무자가 매출에누리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을 동일한 세 금계산서 금액란에 구별하여 기재할 경우 에누리액을 차감한 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증치세를 계산한다. 만약 에누리액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계산서 금액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회계처리방법과 관계없이 증치세를 계산할 때에는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매출할인(销售折扣)은 판매 후에 발생한 것으로 일종의 이자비용이기에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또한 매출할인은 품질할인과도 다르다. 품질할인은 재화 판매 후 당해 재화의 품질 원인으로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가격할인이므로 할인 후의 가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② 신규교환 판매방식(以旧换新销售)

재화의 판매와 재화의 회수는 별개의 업무활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규교환 판매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할 경우 신제품의 동기 판매가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금·은 장식의 교환업무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실제로 수취한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액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한다.

③ 원금상환 판매방식

원금상환 판매방식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일정 기한 내에 일부 판매대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는 판매방식이다. 원금상환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그 판매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원금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④ 물물교환 판매방식(以物易物销售)

물물교환 판매방식이란 매매거래 쌍방 당사자가 화폐로 결산하지 않고 재화로 정산하여 매매를 실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물물교환 판매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경우

쌍방 모두 구매와 판매 처리를 동시에 하고 각자가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각자가 수취한 재화의 구매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⑤ 포장재의 임대차로 수취한 보증금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포장재의 임대로 수취한 보증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간이 1년 이내이며 또한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기간을 넘거나 1년을 넘겼을 때는 보증금을 공급가액에 산입하여 증치세를 징수한다.

주류의 경우, 맥주와 황주(黃酒)는 상기 방식에 따라 징수하고 맥주와 황주를 제외한 기타 주류 제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포장자재 보증금에 대하여는 반환여부와 회계상 어떻게 처리하였는 지와 상관없이 모두 당기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증치세를 징수한다.

(2) 매입세액의 확정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받을 때 지급하거나 부담한 증치세액이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증치세 공제 서류상 표시된 증치세액이다.

- ① 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구입한 경우,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증치세액
- ②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 해관으로부터 취득한 세금완납증서에 기재된 증치세액
- ③ 증치세 납세의무자가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구매가격과 공제율 9%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 납세의무자가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13%의 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위탁가공 또는 수탁가공할 경우 1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④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산·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을 10%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생산·생활성 서비스 납세자라 함은 우정서비스·전신서비스·현대서비스·생활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매입세액을 15% 추가 공제할 수 있다. 생활성 서비스 납세자라 함은 생활서비스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생산성 서비스(우정서비스·전신서비스·현대서비스) 납세자는 여전히 당기 매입세액을 10% 추가 공제할 수 있다.

⑤ 납세자가 국내 여객운송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세액을 잠정 확정한다.

1) 증치세전자보통세금계산서를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 상에 기재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항공운송전자티켓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text{항공여객운송 매입세액} = (\text{가격} + \text{연료부가비}) \div (1 + 9\%) \times 9\%$$

3)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철도승차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text{철도여객운송 매입세액} = \text{액면금액} \div (1 + 9\%) \times 9\%$$

4) 여행자 신분정보를 기재한 도로·수로 등 기타 티켓을 취득한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text{도로·수로 등 기타 여객운송 매입세액} = \text{액면금액} \div (1 + 3\%) \times 3\%$$

(3) 매입세액 인증확인기한의 취소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1월 1일 및 그 이후에 발급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해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유료도로통행료 증치세전자보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인증확인·감사대조·공제신고 기한을 취소한다. 납세자는 증치세 납세신고 시 본 성 증치세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상술 공제 증명 정보에 대한 용도 확인을 해야 한다.

(4) 매입세액의 전출(进项税额转出)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규정에 따라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취득, 보관하지 않았거나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를 간이계세방법, 면세항목, 단체복리, 개인

소비에 사용하거나 또는 재화나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한 경우의 관련된 원자재 및 운송비, 대출서비스, 외식서비스, 주민일상서비스, 오락서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전출하여야 한다.

나. 소규모납세자의 납부세액

(1) 소규모납세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한 경우 공급가액과 규정된 징수율을 적용하여 간이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text{납부세액} = \text{공급가액} \times \text{징수율}$$

(2) 공급가액에 납부할 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규모납세의무자가 재화 또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합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 공급가액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공급가액} = \text{세금이 포함된 공급가액} / (1 + \text{세율})$$

(3) 정확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건전한 회계처리를 진행하는 소규모납세자는 과세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일반납세자로서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4) 소규모납세자 면제 적용 조건¹⁾

2019년 1월 1일부터 월 매출액이 10만원 이하인 증치세 소규모납세자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에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등 모든 증치세 과세대상행위로 인한 매출액 합계이다. 소규모납세자의 매출액 합계가 10만원안을 초과하지만 여기서 부동산 매출액을 차감한 후 잔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의 매출액에 대해서만 증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 재화를 수입하는 납세의무자의 납부 세액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組成計稅價格)을 근거로 증치세를 계산한다.

$$\text{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text{관세과세가격} + \text{관세}$$

수입 재화가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할 경우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에는 소비세도 포함되어야 한다.

1) 2021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소규모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월 10만원으로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본 부분에 대한 규정은 2021년 3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수입한 경우 증치세 납부세액은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증치세 납부세액 = 세금계산을 위한 추정가격 × 세율

5. 신고납부

가. 납세의무 발생시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납세의무자의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 증빙을 취득한 당일(계약서상 약정한 대금지급일, 미약정 또는 계약서 미체결 시 재화 출하 당일, 서비스·무형자산 양도 완료 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 당일)이다.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

나. 납세지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동일 현/시(縣,市)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은 본점에서 종합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현/시에 가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외출 경영사항을 보고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점 또는 서비스 발생지의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이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활동이 발생한 곳 또는 서비스 발생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발생지에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또는 거주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 납부기한

증치세의 고정된 납세기한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되어 있고 기한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회 취득한 수입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소규모납세자, 은행, 재무회사, 투자신탁회사, 신용회사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납세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는 해관이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를 작성,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사용과 관리

가.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종류와 발급시간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종류	일반납세자	보통세금계산서, 전용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전자보통세금계산서, 전자전용세금계산서
	소규모납세자	보통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전자보통세금계산서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간	납세인은 증치세 납부의무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21일부터, 천진(天津), 하북(河北), 상해(上海), 강소(江苏), 절강(浙江), 안휘(安徽), 광둥(广东), 중경(重庆), 사천(四川), Ning파(宁波) 및 심천(深圳) 등 11개 지역의 신설 납세자 중에서 전용세금계산서 전자화 발행을 실행하며,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그 중, Ning파, 석가장 및 항주 등 3개 지역은 이미 전자전용세금계산서의 수령자 범위를 전국으로 보급하였다.

2021년 1월 21일부터, 북경(北京), 산서(山西), 내몽고(内蒙古), 요녕(辽宁), 길림(吉林), 흑룡강(黑龙江), 복건(福建), 강서(江西), 산둥(山东), 하남(河南), 호북(湖北), 호남(湖南), 광서(广西), 해남(海南), 귀주(贵州), 운남(云南), 서장(西藏), 섬서(陕西), 감숙(甘肃), 청해(青海), Ning하(宁夏), 신강(新疆), 대련(大连), 하문(厦门) 및 청도(青岛) 등 25개 지역의 신설 납세자 중에서 전용세금계산서 전자화 발행을 실행하고,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범위는 전국으로 한다.

단위 및 개인은 전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검사·확인 플랫폼(<https://inv-veri.chinatax.gov.cn>)을 통하여 전자전용세금계산서 정보에 대하여 검사·확인을 진행해야 하고 전국 증치세 세금계산서 검사·확인 플랫폼을 통하여 증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버전 문건 리더를 다운로드하며 전자전용세금계산서를 검열하고 또한 전자 서명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

나.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발급 범위

납세자 종류	발급 범위	
일반납세자	전용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 규정: (1) 상업기업 일반납세자가 도매한 담배, 술, 식품, 의류, 신발과 모자, 화장품 등 소비품 (2) 소비자 개인에게 판매한 재화, 제공한 과세대상행위(용역, 부동산, 무형 자산 거래 등) (3) 면세 규정을 적용한 경우 (4) 간이징수정책 규정을 부분 적용한 경우 (5) 법률, 법규 및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소규모납세자	자가발급	자원적으로 자가발급(대리발급 불가)
	대리발급	세무기관 대리발급 신청

7. 원천징수제도

경내에 경영 기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증치세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의 경내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경내에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기는 앞서 언급한 “납세의무 발생시점”, 원천징수 기한은 앞서 언급한 “납부기한”의 내용을 적용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text{원천징수 세액} = \text{구매자가 지불하는 대금} \div (1 + \text{세율}) \times \text{세율}$$

8.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의 환급(면세)

수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이미 부담했거나 부담해야 하는 증치세와 소비세 등 간접세에 대해 환급 또는 면세를 실행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하는 관례로, 각국의 수출 재화 및 서비스의 공평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가. 기본 환급정책

중국의 증치세 환급(면제) 제도의 두 가지 기본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세금 환급(면제) 정책 - 수출 면세 및 환급(영세율)

증치세 일반납세자, 증치세 일반계세방법(간이계세방법과 대응됨)을 실행하는 경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영세율 정책이 적용되며,

첫째, 수출단계의 재화 또는 가공용역 및 특정 서비스에 발생하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둘째, 수출 재화 또는 가공용역 및 특정 서비스의 전단계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환급한다.

(2) 면세 정책

수출단계의 증치세는 면제하나 전단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환급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 방식은 주로 증치세 소규모납세자가 재화를 수출하거나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피입약, 황금·백금 성분이 함유된 상품, 다이아몬드, 농업생산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산물, 임가공 재수출 재화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납세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6개월 이내에는 다시 면세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면세와 영세율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나. 환급세액의 환급세율

수출 재화의 증치세 환급률은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그 재화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급률을 적용하는 재화, 가공용역, 서비스의 경우 분리하여 통관, 환급(면제) 신고를 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았거나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낮은 환급률을 적용한다.

다.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1) “면세, 충당, 환급”세의 계산방법

“면세, 충당, 환급”세의 계산방법은 생산한 재화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출하는 생산기업에 적용된다. 여기서 생산기업이란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하고 관할 세무기관으로부터 일반 납세자임을 확인 받았음은 물론 실제로 생산능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면세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또는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에 대하여 그 기업의 생산·판매 단계에서의 증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충당세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에 소모된 원재료, 부품, 연료 등에 포함되어 환급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국내에서 판매한 재화

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세는 생산기업이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위탁하여 수출한 자가 생산 재화의 당월내 총당할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총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당기 납부세액의 계산

당기 납부세액 = 당기 국내 판매 재화의 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당기 면세 불능 및 총당 불능 세액) - 전기 총당하지 못한 매입세액

당기 면세 불능 및 총당 불능 세액 = 당기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FOB) × 외화인민폐환산율 × (수출재화의 증치세 세율 - 수출재화의 환급세율)

2) 환급가능세액의 계산

환급가능세액 = 수출재화의 본선인도가격 × 외화인민폐환산율 × 수출재화의 환급률

3) 당기 환급세액 및 면세, 총당세액의 계산

① 당기 말 총당세액의 잔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당기 환급세액 = 당기 말 총당세액의 잔액

당기 말 면세, 총당세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 당기 환급세액

② 당기 말 총당세액의 잔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당기 환급세액 = 당기 환급가능세액

당기 말 면세, 총당세액 = 0

(2) “면세, 환급”세의 계산방법

면세, 환급세의 계산방법은 생산능력이 없는 무역기업이 수출한 재화나 위탁 가공 수리한 재화를 수출하는 일반납세자에 적용한다.

면세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출단계에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환급세는 재화 수출 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규정된 환급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기업의 환급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위탁 가공, 수리 수선한 재화 이외의 재화를 수출하는 환급세액의 계산

당기 환급세액 = 수출재화의 구매전용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 수출재화의 환급률

2) 위탁 가공, 수리 수선한 재화를 수출하는 환급세액의 계산

당기 환급세액 = (가공, 수리 수선에 사용된 원재료 가격 + 가공비) × 수출재화의 환급률

라. 수출 환급(면제)의 신고

납세자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 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수출 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규정된 환급(면제) 신고 기한 내에 월별로 관할 세무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9. 관련 법령²⁾

- 1) 증치세 집행조례
- 2) 증치세 집행조례실시세칙
- 3)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 4) <증치세 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공고 2019년 제39호)
- 5) <증치세 일반납세자 등록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43호)
- 6)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정책에 관한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4호)
- 7) <증치세 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재세[2018]32호)
- 8)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재세[2018]33호)
- 9) <수출재화의 증치세와 소비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39호)
- 10) <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추가 공제 정책에 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87호)
- 11) <증치세 공제 증명 인증확인기한 취소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45호)
- 12) <신설 납세자 증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전자화 실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22호)

2) 본 책자에서 기재한 내용 외의 증치세 세부내용 변동에 관한 법령은 국가세총국(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에서 발표한 법령을 참고할 수 있다.

(<http://www.chinatax.gov.cn/chinatax/n810341/n810825/index.html?title=>)

II. 중국의 자산투자 및 구조조정 관련 세무

1. 중국 자산 관련 세법 개요

가. 부동산 취득세

(1) 납세의무자

중국 내에서 토지 건물의 권리(토지 건물사용 및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 권리를 인수한 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자로서 “계약거래세 집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취득 및 등록)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수란 양수, 구매,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토지·건물의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위는 기업단위, 사업단위, 국가기관,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을 말하고,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2) 과세대상

1) 토지, 건물의 권리 이전

① 국유토지 사용권의 취득, 토지사용권의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한 취득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지불하고 국가는 국유토지사용권을 일정기한 동안 토지 사용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건축물의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한 취득

2)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간주

토지, 건물의 권리는 다음의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토지사용권 양도, 건물매매, 건물 증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과세한다.

① 토지, 건물 권리를 다른 곳에 투자 또는 현물출자

② 토지, 건물 권리로 채무를 상환

③ 보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토지 건물 권리를 인수

④ 선구매방식 또는 건설자금 선급방식에 의한 토지, 건물 권리의 인수

(3) 과세표준

① 국유토지 사용권의 취득,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매매로 인한 취득: 계약서상의 양

수대가

- ②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증여로 인한 취득: 소재지 과세기관에서 확인한 시장가격
- ③ 토지사용권 및 건축물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 토지사용권 교환, 건물교환에서 교환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폐, 실물 무형 자산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더 지불한 일방이 세금을 납부. 다만 부동산과 동산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음
 - 교환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약거래세를 면제

(4) 감면: 기업구조조정 관련, 재세[2018]17호³⁾

1) 기업형태 전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따라 비기업제회사가 전부 유한책임회사(국가소유의 독자회사 포함) 또는 주식회사로 재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재건,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재건하는 경우, 원 기업의 투자주체를 변경하지 않고 신설회사의 75% 이상 지분을 보유하며 원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조건 만족 시, 신설회사에 대하여 그가 취득한 원 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2) 주식(지분)양도

주식(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 및 개인이 인수하는 주식(지분),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없기때문에 계약거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합병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고 기존 기업의 투자주체가 존속할 경우, 합병 후의 기업이 인수하는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에 대해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4) 분할

기업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분할 전 기업의 투자주체와 동일한 기업으로 분할하였을 경우, 분할 후의 기업이 인수하는 분할 전 기업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에 대해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5) 기업 파산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파산할 경우 채권자(파산기업의 직원 포함)가 파산기업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에 대한 채무를 승계할 때에는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비채권자가 파산기업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승계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등 관

3) 실행시간: 2018.01.01.~2020.12.3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후속 규정은 2021년 3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후속 규정이 발표된 후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소급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런 법률 및 법규정책에 따라 원 기업 직원 전부를 타당하게 배치하고 그 중 원기업의 30%를 초과하는 직원과 3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득한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계약거래세를 50% 감면하여 징수하며, 원 기업의 직원 전부와 노동계약을 3년 이상 체결할 경우 계약거래세를 전액 면제한다.

6) 채권 출자전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채권 출자전환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채권 출자전환 후 새로 설립한 회사가 인수한 원래 기업의 토지 건물소유권에 대하여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7) 자산 이전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국유자산관리부문이 규정에 따라 행정성 조정을 진행하거나 국유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인수한 단위에 대하여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동일 투자주체 내부 소속기업 간의 토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투자주체 내부 소속기업이란 모회사와 그의 100% 자회사, 투자주체가 동일한 자회사, 개인과 그가 독자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개인독자기업, 일인유한회사 사이를 말한다.

(5) 세율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가 3%~ 5%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실사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6) 세액계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7) 납세의무 발생시기

계약거래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 권리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 권리 이전계약 관련 증명을 취득한 당일로 한다.

(8) 신고와 납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10일 내에 관할 세무기관 등에 신고하고, 동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성진토지사용세

(1) 납세자

도시, 교회, 건제진(建制鎭), 공장광산구역(工礦區)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자이다.

(2)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 사용면적의 측량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단독으로 설립한 지하 건축용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50%로 징수한다.

(3) 세액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아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50만 이상 대도시: 평방미터 당 1.5~30원
- 20만~50만 중소도시: 평방미터 당 1.2~24원
- 20만 이하 소도시: 평방미터 당 0.9~18원
- 현, 건제진, 공광업구: 평방미터 당 0.6~12원

(4) 납세기한

년을 단위로 계산하여 분할하여 납부하며 납부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중앙정부에서 규정한다. 통상 월, 분기, 반기 혹은 년을 단위로 기한을 정한다.

다. 방산세

(1) 납세의무

방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건물을 소유한 단위나 개인으로 한다.

(2)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 ① 과세대상: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실내, 벽, 기둥을 갖추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산, 학습, 근무, 오락, 거주 또는 물품저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 ② 과세범위: 방산세의 과세범위는 도시, 현, 건제진, 공업광업구이다.

(3) 과세표준

- ① 원가기준: 회계장부상 건축물(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정부가 정한 일정액(건축물 가

액의 10% ~30%)을 차감한 가액

② 임대료기준: 당해 과세기간의 총 임대료 수입

(4) 세율

① 월가기준: 1.2%(기타 단위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② 임대료기준: 12%(개인이 시장가격으로 거주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 4% 적용)

(5) 세액계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6) 신고와 납부

방산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구체적인 분할 납부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라. 증치세

(1) 납세자

중국 경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혹은 개인이 증치세의 납세자이다.

(2)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양도는 제외한다.

(3) 감면대상, 재세[2016]36호

① 북경, 상해, 광주 및 심천 이외의 지역에 적용

개인이 구매하여 2년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대외 판매한 경우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개인이 구매하여 2년 이상(2년 포함)이 된 주택을 대외 판매한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② 북경, 상해, 광주 및 심천 지역에만 적용

개인이 구매하여 2년이 되지 아니 하는 주택을 대외 판매한 경우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개인이 구매하여 2년 이상(2년 포함)이 된 비보통주택을 대외판매하는 경우 판매수입에서 주택 구매금액을 차감한 후의 차액에 따라 5%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이 구매하여 2년 이상(2년 포함)이 된 보통주택을 대외 판매한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4)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취득일 및 취득방식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판매 일반 신고·납부 방법 |

구분	부동산 취득일	부동산 유형	계세방법	세율	사전 징수율	매출액
일반 납세자	2016.04.30 전	-	일반계세방법	9%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예납 시 취득가액 공제 가능)
			간이계세방법	5%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 취득가액
		자가 건축	일반계세방법	9%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간이계세방법	5%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2016.05.01 후	-	일반계세방법	9%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예납 시 취득가액 공제 가능)
		자가 건축	일반계세방법	9%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소규모 납세자	-	-	간이계세방법	5%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 취득가액
	-	자가 건축	간이계세방법	5%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 특수 납세자 부동산 판매 신고·납부 방법 |

구분	부동산 유형	계세방법	세율	사전 징수율	매출액	
부동산 개발기업	일반 납세자	자가개발 기존 프로젝트	일반계세방 법	9%	3%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 토지 양도금
			간이계세 방법	5%	3%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소규모 납세자	자가개발	간이계세 방법	5%	3%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 부동산 운용리스서비스 일반 신고·납부 방법 |

구분	부동산 취득일	계세방법	세율	사전 징수율	매출액
일반납세자	2016.04.30 전	일반계세방법	9%	3%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간이계세방법	5%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2016.05.01 후	일반계세방법	9%	3%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소규모납세자	-	간이계세방법	5%	5%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개인	- 비 주택	간이계세방법	5%	-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 주택	간이계세방법	5% 징수율에 1.5% 감면세율 적용	-	취득한 전체대금 + 가격외비용

주) 기업과 부동산 소재지가 동일 현(시)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상기 징수율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세금을 예납한 후 기구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 납세 신고

(5) 납세시기

증치세 납세의무자의 발생시점은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계약서상 약정한 대금지급일, 미약정 또는 계약서 미체결 시 재화 출하 당일, 서비스 무형 자산 양도 완료 당일 또는 부동산 소유권 변경 당일)이다. 세금계산서를 선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수금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선수금을 수취한 당일로 한다.

증치세의 고정된 납세기한은 각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되어 있고 기한을 정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회 취득한 수입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납세기한으로 할 경우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마. 인지세⁴⁾

(1) 납세의무자

중국 내에서 <인지세잠행조례>에서 열거하고 있는 문서를 작성, 사용, 수령하는 모든 단

4) 2021년 2월 인지세법 초안 심사 및 입법 추진 중이고 전체 틀은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부종목의 세율이 낮아질 예정이다.

위(단체) 및 개인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대상

- ① 구매, 판매, 가공, 건설공사의 하청, 자산의 리스, 화물운송, 창고보관,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
- ② 재산권을 양도하는 문서
- ③ 영업회계장부
- ④ 권리나 실시권을 입증하는 증명서(허가증서)
- ⑤ 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

(3) 과세항목별 세율

과세문서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는 백분율에 의한 세율이나 문서건 당 정액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인지세 과세항목 및 세율표 |

종 류	내 용	세 율
매매계약	공급계약, 예매, 합작구매 및 협동생산, 협의구매, 조립, 보상무역, 구상무역 및 유사한 계약	구매 또는 계약금액의 0.03%
가공계약	가공, 특별주문, 수선 및 수리, 분해검사수리, 인쇄, 광고, 조사 및 유사한 계약	가공료 수취액의 0.05%
설계도급계약	실지조사 및 설계계약, 분할계약 및 재도급 계약	수입금액의 0.05%
건설도급계약	건설, 설치 및 엔지니어링 계약	도급금액의 0.03%
재산임대계약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기계, 장비 및 기타 설비 등의 임대(리스)계약	임대수입의 0.1%, 최저 1원
화물운송계약	항공, 철도, 해운운송, 내수로운송, 육상운송 및 연계운송	운송료의 0.05%
창고보관계약	보관 및 저장계약	저장, 보관료의 0.1%
금전대차계약	은행(기타의 금융기관 및 대금 대리인 포함), 은행간 대출을 제외	대출액의 0.005%
재산보험계약	재산보험, 책임, 보증, 보장 및 신용이행보험 및 유사한 보험계약	보험료수입의 0.1%
기술계약	기술개발, 양도, 자문용역 및 유사한 계약	계약서 기재금액의 0.03%
재산권이전증서	재산의 소유권 이전,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사용권 및 유사한 이전계약	표기액의 0.05%

종 류	내 용	세 율
사업용 장부	생산 및 경영에 사용되는 회계장부	실제자본과 자본잉여금 0.05% (2018년 5월 1일부터 감반징수) 기타의 회계장부: 건당 5위안 (2018년 5월 1일부터 면제)
허가 및 면허	정부발행 건축허가, 산업적/상업적 영업허가, 상표 및 특허증명, 토지사용	허가 건당 5위안

(4) 납부방법

- ① 인지세의 납부는 납세자가 인지세잠행조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인화세 상당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한 번에 부착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됨
- ② 매 건의 납부할 세액이 5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관에 납부하고 납부증서를 과세문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문서상에 인지세를 납부하였다는 과세기관의 날인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음
- ③ 동일 종류의 과세문서에 인지를 부착하는 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청하여 일정기간의 세액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동안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없음
- ④ 이미 인지를 첨부한 후 과세문서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동 증 가액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5) 벌과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 및 체납금을 추징하고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 ① 과세 증서에 인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적게 부착한 경우 또는 이미 과세 증서에 붙여 놓은 인지세 표의 절취선에 날인하거나 선을 긋는 방법으로 인지세 표를 소인하지 않은 경우
- ② 이미 부착한 인지를 떼어 다시 사용함으로써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 ③ 인지세를 일정기간 단위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결정한 납세기한을 초과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바. 토지증치세

(1) 납세의무자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착물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양도차익)을 수취하는 모든 단위 및 개인은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단위는 각종 기업 사업단체,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을 말하며 개인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상속 및 증여에 의한 무상이전은 포함되지 않음

(2) 과세대상

다음과 같이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착물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국유토지: 국가법률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 지상건물: 지상 지하의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 토지상에 건설한 모든 건축물
- 부착물: 이동이 불가능하며 일단 이동하면 손상되는 토지상에 부착된 물품

(3) 과세표준

1) 가치증가액: 토지사용권 또는 지상건축물 양도에 따른 대가(양도가액)에서 아래 공제항목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

2) 가치증가액의 계산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

①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 납세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토지대금과 국가 통일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리비용

② 토지개발원가 및 비용

- 납세인이 부동산개발사업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토지수용 및 철거보상비, 전단계공사비(선급공사비), 건설공사비, 기초시설비, 공공관련시설비, 개발간접비용을 포함
- 토지수용 및 철거보상비: 토지수용비, 경작지 점용세, 노동력 재배치 및 관련된 지상, 지하 부착물 철거보상을 위한 순수지출, 이주용 건물구입 관련 지출 등을 포함
- 전단계공사비: 기획, 설계, 타당성연구와 수맥, 지질조사, 측량, 제도, 상하수도, 전기, 도로, 정지 등 지출을 포함
- 건설공사비: 발주형식으로 하청업체에 지불한 비용과 자체영업방식으로 발생한 비용
- 기초시설비: 개발구역내의 도로, 수도, 배전, 가스, 하수처리, 통신 조명, 환경위생, 녹

화 등 공사로 발생한 지출을 포함

- 공공시설비: 유상 양도할 수 없는 개발구역내의 공공관련시설에 발생한 지출을 포함
- 개발간접비용: 개발사업을 직접 조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인건비, 직원복리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사무비, 수도전기료, 노동보호비, 가설전용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

③ 신축건물 및 그 부착물에 대한 비용 등 부동산 개발비용

- 부동산개발사업에 관련된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
- 재무비용중의 이자지급은 부동산양도 항목별로 비용을 배분할 수 있고 금융 기관의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실제대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상업은행의 동기 동종 대출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부동산개발비용은 상기 2가지 항목 합계금액의 5% 이내로 계산하여 공제
- 이자지급을 부동산항목에 따라 배분할 수 없거나 금융기관의 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개발비용은 상기 2가지 항목 합계금액의 10% 이내로 계산하여 공제
- 상술한 공제액 계산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함

④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 부동산 양도시 납부한 성시유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비부가, 인지세(부동산기업은 인지세 공제 불가)

⑤ 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공제항목

(4) 세 율

번호	증치액과 공제항목금액의 비율	세율(%)	속산공제계수(%)
1	50% 미만	30	0
2	50% 이상 100% 미만	40	5
3	100% 이상 200% 미만	50	15
4	200% 이상	60	35

(5) 감면: 기업구조조정 관련, 재세[2018]57호⁵⁾

1) 기업형태 전환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에 따라 비기업제회사가 전부 유한책임회사(국가소유의 독자회사 포함) 또는 주식회사로 재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재건하는 경우, 재건 전의 기업이 재건 후의 기업에게 토지사용권과 부동산을 이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토지

5) 실행기간: 2018.01.01~2020.12.3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후속 규정은 2021년 3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후속 규정이 발표된 후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소급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합병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고 기존 기업의 투자주체가 존속할 경우, 기존 기업의 부동산을 합병 후의 기업에게 이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분할

기업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분할 전 기업의 투자주체와 동일한 기업으로 분할하였을 경우, 분할 전의 기업이 분할 후의 기업에 부동산을 이전/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4) 현물출자

부동산으로 출자할 경우 잠정적으로 토지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 거래 일방이 부동산개발기업일 경우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조세우대

① 판매를 위하여 보통표준주택을 건축하는 납세자가 가치증가액이 공제항목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보통표준주택은 소재지의 일반민용주택표준에 따라 건축한 거주용 주택임. 고급아파트, 별장, 콘도단지 등은 보통표준주택에 속하지 않음
- 보통표준주택과 기타 주택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함

② 국가가 수용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 면제

- 도시계획 및 국가건설의 필요로 정부에 수용되는 가옥 또는 회수되는 토지사용권을 말함

(7) 세무기관 결정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부과

① 부동산 거래가격의 은닉 및 허위보고

- 납세자가 토지사용권, 지상건축물 및 그 부착물의 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낮게 보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동산 양도가격을 은닉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구가 동종 부동산의 시장거래가격에 따라 평가
- 세무기관은 평가가격에 근거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을 확정

② 공제항목 합계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납세 신고할 때 공제항목금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며, 공

제항목금액을 사실대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구는 건물대체원가에 신규할인 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건물원가와 토지사용권 취득시 기준지가에 따라 평가함. 세무기관은 평가가격에 따라 공제항목 금액을 확정함.

- ③ 부동산의 양도가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양도의 실지거래가격이 부동산평가기구가 평가한 거래가격보다 낮고, 증빙이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무기관은 부동산평가가격을 참고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을 확정함.

(8)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양도계약 서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에 건축물과 토지사용권 증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보고서 및 부동산양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재 관할 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하고 세무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토지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빈번하게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동산 양도후 매 건마다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기관의 승인을 거쳐 정기적으로 납세신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한은 세무기관이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사. 자산투자 관련 개인소득세

(1) 과세대상

중국에 투자한 자산과 관련된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자산양도소득. 즉 개인이 유가증권, 주식,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수취한 소득
- ② 이자, 배당소득. 즉 개인이 채권, 지분(주식) 보유를 통해 얻은 이자 및 배당소득

(2) 납세의무자

납세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두 가지로 분류된다. 중국 경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는 없지만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거주자라 하며, 거주자의 경우 중국 경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법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중국 경내에 거주지가 없고 거주일이 183일 미만인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세법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한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 중국 경내의 건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중국 경내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그 금액의 지불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

- 중국 경내의 채권, 주식, 지분의 보유를 통해 중국 경내의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자, 배당소득은 그 금액의 지불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중국 경내에서 취득한 소득으로 간주

(3)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 공제, 납부 및 확정신고를 대리할 의무가 있다.

(4) 과세소득 계산

- 자산양도 과세소득: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한 수입에서 자산의 취득원가와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
- 이자, 배당 과세소득: 매번 발생하는 수입

(5) 세율

자산양도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모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6) 납부기한

자산양도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이 발생한 월의 익월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세무신고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중국 구조조정 관련 세무

가. 지분양도 관련 세무

지분양도는 회사의 소유권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법인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그 소유자인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다.

(1) 개인(외국개인 포함)의 지분양도

지분양도는 재산양도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인지세와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 인지세

① 과세대상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 또는 경외에서의 체결/작성을 막론하고 중국 경내에서 법적효력을 갖고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 계약서/증빙은 모두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지분양도 행위는 지분양도 계약서 체결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② 과세표준

지분양도 계약서 상의 지분양도가격

③ 세율

지분양도는 재산양도증빙 중의 재산소유권 양도증빙 과세범위에 속하며 0.0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세액계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⑤ 납세의무자

계약서 증빙을 체결/작성하는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자이다.

⑥ 납세의무발생시간

지분양도계약서 체결 시 인지를 구매하여 부착해야 하며, 중국 경외에서 체결한 계약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할 때 인지를 부착한다.

2) 개인소득세

① 과세대상

-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는 없지만 경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 중국 경내 또는 경외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고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주소는 없지만 거주한지 183일 미만인 개인이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

② 과세표준

과세표준(지분양도소득) = 지분양도수입 - 지분취득원가 - 지분양도 시 지불한 인지세 등 합리적인 비용

③ 세율

지분양도는 재산양도에 속하며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⑤ 납세의무자

개인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대금 지불 단위 또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⑥ 납세신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에게 지분양도대금을 지불할 때 세법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차월 15일 전까지 당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⑦ 납세지점

개인주주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지분변경 발생 기업 소재지 지방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개인이 지분양도 시 취득한 소득은 공정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단 ① 지분양도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②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국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초과하여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 ③ 양도자가 지분양도수입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세무국에서 추계방법을 취하여 지분양도수입을 확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 집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관리방법(시행)에 대한 통지>(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7호)

<지분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추계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0년 제27호)

(2) 회사의 지분양도

1) 인지세

“(1) 개인(외국개인 포함)의 지분양도” 참조.

2) 기업소득세

① 과세대상

- 거주자기업이 경외 및 경내 원천 소득을 취득하는 행위
-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이 경외 또는 경내 원천 소득을 취득하는 행위
-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해당 기구 장소와 연관이 없는 행위

③ 세율

양도자 구분	적용세율
1. 거주자기업	25% 20%(소규모 저이익기업) 15%(고신기술기업, 기술 선진형 서비스 기업)
2.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	25%
3. 중국에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립하였지만 취득한 소득이 해당 기구 장소와 연관이 없는 비거주자기업	10%

④ 세액계산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감면세액} - \text{세액공제}$$

⑤ 납세의무자

중국 경내에서 소득을 취득한 기업(거주자기업과 비거주자기업 포함)은 기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⑥ 납세신고

기업소득세는 통상 매 분기 혹은 매월 종료 후 15일 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 또한 연도 종료 후 1월부터 5월까지 연말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지난 1년간의 기업소득세를 정산하고 세금을 환급 또는 추납한다.

⑦ 감면 및 세수우대

- 고신기술기업,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 국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

기술기업,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은 15%의 감경세율을 적용한다.

- 소규모저이익기업: 조건에 부합되는 소규모저이익기업은 20%의 감경세율을 적용하며, 연간과세소득의 수준에 따라 실효세율은 5% 또는 10%이 된다.

소규모 저이익 기업	고신기술 기업
<p>국가의 비제한 및 비금지 업종에 종사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p> <p>(1) 연간 소득세과세표준: 300만원 이하</p> <p>(2) 직원수: 300명 미만</p> <p>(3) 자산총액은 5,000만원 이하</p> <p>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p> <p>- 연간과세소득 100만원 미만인 부분은 과세소득의 25%에 20% 세율 적용: 실효세율 5%</p> <p>- 연간과세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인 부분은 과세소득의 50%에 20% 세율 적용: 실효세율 10%</p>	<p>핵심자주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p> <p>(1) 제품(서비스)이 《국가중점지원의 고신기술영역》의 규정범위에 속한다.</p> <p>(2)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 이상</p> <p>(3) 고신기술제품(서비스)수입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 이상</p> <p>(4) 과학기술인원이 기업의 직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비율 이상</p> <p>(5) 고신기술기업 인증관리방법에 규정된 기타 조건</p>



관련법령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 <소규모저이익기업 세수 감면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9]13호)⁶⁾

(3) 지분양도 관련 조세조약 규정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면제

1) 한중 조세조약 내용

앞서 언급된 중국세법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이 주로 중국(또는 한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 간접적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중국(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세수징수관리법 제91조). 따라서 앞서 언급한 중국 세법의 개인소득세 및 기업소득세의 경우 한중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는 과세 제외되고 한국에서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인지세는 여전히 중국에서 과세됨)

2) 중국내 한중 조세조약 내용에 대한 해석

6) 재세[2019]13호 시행시간: 2019.01.01~2021.12.31. 2021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소규모 저이익 기업의 경우 연간과세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 현행 우대정책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50% 감면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본 부분에 대한 규정은 2021년 3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한중 조세조약의 내용의 적용은 회사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지분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분가치의 50퍼센트 이상이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거주자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있다.



관련법령

<한중 조세조약>

<세수징수관리법 >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에 대한 협정> 및 의정서
조문 해석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 [2010]75호)

나. 합병 관련 세무

기업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新設合併) 또는 흡수합병(吸收合併)의 방법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합병하면 당해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存續法人)에 이전되고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지분 또는 비지분 지급을 취득하게 된다.

(1)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은 합병을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자산판매에 대한 증치세, 토지증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유관 규정에 따라 해당 세금을 면제한다.

기업소득세 측면에서 일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청산소득세 처리를 해야 하고 특수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은 청산절차 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기업소득세처리가 필요하지 않다(일반합병의 경우 청산소득세 처리는<다. 청산 관련 세무> 부분을 참조).

1) 증치세

자산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분할·매각·교환 등의 방식으로 전체 또는 일부의 실물자산(재화 및 부동산 포함) 및 관련되는 채권과 채무 및 노동력을 함께 기타 단위와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증치세 과세대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13호 및 재세[2016]36호).

2) 토지증치세

자산구조조정 과정에서 합병·분할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토지증치세를 잠정 면제한다.

(2) 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

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은 합병과정에서 기업소득세(앞부분 참조), 인지세, 계약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 인지세

합병을 통하여 설립된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이 새로 사용을 시작한 자금장부에 기재된 자금을 대하여 기존에 인지를 첨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다시 첨부하지 아니하고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부분과 향후 새로 증가하는 자금을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자금총액의 0.05%로 인지를 첨부한다.

2) 부동산 취득세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고 기존 기업의 투자주체가 존속할 경우, 합병 후의 기업이 인수하는 합병 전 각 기업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에 대해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관련법령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재세[2009]59호)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0년 제4호)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8호)
- <자산구조조정 관련 증치세 문제>(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13호)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인지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03]183호)
- <기업 구조조정 관련 계약거래세 계속 지원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8]17호)⁷⁾
- <기업 구조조정 관련 토지증치세 계속 지원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8]57호)⁸⁾

다. 청산 관련 세무

기업 청산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세무처리는 기업소득세의 처리이며, 청산과정에서 자산(재화, 건물, 토지사용권 포함)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 경영과정에서의 세무처리방법과 같다. 즉 재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증치세를 건물 및 토지사용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증치세 및 토지증치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7) 실행시간: 2018.01.01.~2020.12.3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후속 규정은 2021년 3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후속 규정이 발표된 후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소급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실행시간: 2018.01.01.~2020.12.31.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후속 규정은 2021년 3월 17일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후속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본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후속 규정이 발표된 후에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어떻게 소급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목	과세표준	세율
(1) 증치세	매매가액 또는 양도차익 (매매가액 - 취득원가)	9% 또는 5%
(2) 성건세 등 부가세	증치세액	12% 또는 10%
(3) 토지증치세	양도차익(매매가액 - 취득원가 - 기타비용)	30% ~ 60%
(4) 기업소득세	양도차익(매매가액 - 취득원가 - 기타비용)	25%
(5) 인지세	매매금액	0.05%

이하에서는 청산의 경우 기업소득세, 즉 청산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청산소득이란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1조에 근거, 청산소득이란 기업 전부 재산의 현금화할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순자산가치 청산비용 관련 세무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회사에서는 전체 청산기간을 한 개 독립적인 납세연도로 간주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청산소득은 이전년도손실을 보전(彌補)할 수 있다.

(2) 기업청산 기업소득세 처리내용

- ① 모든 자산은 현금화 가능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한다.
- ② 채권 정산, 채무 상환의 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한다.
- ③ 지속경영원칙을 변경하고 미지급비용(預提費用) 또는 연기비용(待攤費用)을 처리한다.
- ④ 법에 의하여 손실을 보전하고 청산소득을 확정한다.
- ⑤ 청산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 ⑥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재산 주식배당금 등을 확정한다.

(3) 청산소득 적용 세율

청산기간은 정상적인 생산경영기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감면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없고, 예외 없이 기본세율 25%를 적용한다. 물론 소규모저이익기업, 고신기술기업과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은 예외이다.

(4) 청산소득 계산공식

$$\text{납부할 세액} = \text{청산소득} \times 25\%$$

$$\text{청산소득} = \text{전부 재산의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재고자산수량평가손익[盤盈資產] 포함)} - \text{자산 과세기준 순가치} - \text{청산비용(관련 세무비용 포함)} + \text{채무상환손익 +/- 기타 납세조정액} - \text{이전년도손실보전(彌補以前年度虧損)}$$

관련법령

<기업청산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9]60호)

라. 자산매각/인수 관련 세무

자산매각/인수의 세무처리는 합병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며, 차이점은 자산매각은 청산소득세의 처리가 없다는 것이다. (자산매각 및 자산인수의 경우 각 당사자의 기업소득세 기본

내용은 <가. 지분양도 관련 세무>의 <(2).2 기업소득세> 관련 내용, 자산인수의 특수세무처리는 <마. 기업구조 조정의 특수세무처리> 부분 참조)

마. 기업구조조정의 특수세무처리

기업구조조정은 특수구조조정에 해당되어 특수세무처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세무처리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세무처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거래의 각 당사자가 위 특수세무처리 규정에 따라 거래 중 지분지급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관련 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특수세무처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여타의 일반세무처리 방법 하에서는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 관련된 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관련된 자산은 거래가격에 따라 다시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를 확정하여야 한다(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75조).

(1) 특수세무처리의 조건

- ① 피인수 합병 또는 분할되는 부분의 자산 또는 지분비율이 재세[2014]109호에 규정된 비율(50%)에 부합한다.
- ② 구조조정 거래대가 중에 포함된 지분지급금액이 재세[2009]59호에 규정된 비율 (85%)에 부합한다.
- ③ 합리적인 상업목적은 구비하고 세액의 감소 면제 또는 납부지체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④ 기업구조개편 후 연속12개월 내(재편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속 12개월내를 말함) 구조개편자산 원래의 실질 경영활동이 변화하지 않는다.
- ⑤ 기업구조개편 중 지분지급을 취득한 기존의 주요 주주가 구조개편 후 연속 12개월 내(재편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속 12개월 내를 말함)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지 않는다.

(2) 경내와 경외 간의 지분 및 자산인수

기업에 발생한 중국 경내와 경외 간(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지분과 자산의 인수거래는 앞서 설명한 특수세무처리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는 이외에,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여야 비로소 특수세무처리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비거주자기업이 그가 100% 직접 지배하는 다른 비거주자기업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향후 해당 지분양도소득 원천징수 세액 부담의 변화를 조성하지 않으며, 양도자인 비거주자기업이 관할 세무기관에 서면으

로 3년(3년 포함) 내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양수자인 비거주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승낙해야 한다.

- ② 비거주자기업이 그와 100% 직접 지배관계를 구비한 거주자기업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거주자기업의 지분을 양도한다.
- ③ 거주자기업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지분으로 그가 100% 직접 지배하는 비거주자기업에게 투자를 진행한다.
- ④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검토하여 비준한 기타 상황

위 제③ 조 중 거주자기업이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지분으로 그가 100% 직접 지배하는 비거주자기업에게 진행하는 투자의 경우, 그의 자산 또는 지분 양도수익에 대해 특수세무처리를 선택할 경우 10개 납세연도 내에 균등하게 각 납세연도의 과세소득에 산입할 수 있다.

(3) 특수세무처리의 세액감면(비지분지급에 상응한 자산양도손익만 인식)

구조조정거래의 각 당사자가 위 특수세무처리 규정에 따라 거래 중의 지분지급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관련 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을 경우, 그 비지분지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래가 발생한 당기에 상응한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상응한 자산의 계세기초를 조정해야 한다.

비지분지급과 대응되는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

$$= (\text{양도되는 자산의 공정가격} - \text{양도되는 자산의 계세기초}) \times (\text{비지분지급금액} \div \text{양도되는 자산의 공정가격})$$

(4) 세수우대의 승계

기업흡수합병 중 합병 후 존속기업의 특성과 적용하는 세수우대를 적용하는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해당 기업의 잔여기간 세수우대를 계속하여 향유하고 그 우대금액은 존속기업의 합병 직전연도의 과세소득(결손일 경우 '0'으로 함)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5) 일반세무처리와 특수세무처리

일반세무처리와 특수세무처리의 주요 차이는 아래와 같으며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아래 특수세무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지분양도

	일반세무처리	특수세무처리
지분 또는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인식	양도기업에서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	인수기업에서는 비지분지급에 해당되는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만 인식
인수기업이 취득한 지분의 계세기초	공정가격	피인수지분의 기존 계세기초
기업소득세처리(피인수기업)	원칙적으로 불변 유지	원칙적으로 불변 유지
양도기업의 주주가 취득한 인수기업의 지분의 계세기초	-	피인수지분의 기존 계세기초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원래의 각 자산 부채의 계세기초 및 기타 관련 기업소득세 사항	-	불변 유지
소득세 감면	-	비지분지급 부분에 대한 소득만 과세

2) 합병

	일반세무처리	특수세무처리
자산 및 부채의 승계(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격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의 소멸	청산절차 거쳐 소멸	청산절차 없이 소멸
소득세 세무이슈 승계*	-	합병법인이 합병 전의 피합병법인의 소득세 관련 사항 승계
이전년도결손보전**	불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
소득세 감면	-	비지분지급 부분에 대한 소득만 과세

*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의 소득세 관련 사항은 인식미완료 자산손실, 분할인식수입의 처리 및 적용기한미도래 세수우대정책의 승계처리문제 등을 포함

** 합병법인이 보전(공제)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한도액 = 피합병법인 순자산 공정가격 × 합병업무 발생 당해 연말까지 국가가 발행한 최장 기한 국채이자율

3) 자산인수

	일반세무처리	특수세무처리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인식	매각기업에서 매각하는 자산에 대한 소득 또는 손실을 인식	인수기업에서는 비지분지급에 해당되는 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만 인식
인수기업이 취득한 자산의 계세기초	공정가격	피인수자산의 기존 계세기초
기업소득세처리(피인수기업)	원칙적으로 불변 유지	-
매각기업이 취득한 인수기업 지분의 계세기초	-	피인수자산의 기존 계세기초
소득세 감면	-	비지분지급 부분에 대한 소득만 과세

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무 일람표

	지분양도	합병	청산(자산매각)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조세조약 적용시 면제가능)	일반합병 하의 피합병법인 납부	납부
화물판매에 대한 증치세	-	면세	납부
부동산 판매에 대한 증치세 및 부가세 토지증치세 계약거래세	-	면세	납부

★ 계약을 체결하거나 납입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인지세 발생.



관련법령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처리 및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9호)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4]109호)

<비화폐성자산투자 기업소득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4]116호)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0년 제4호)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방법 및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8호)

02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FAQ)

I. 중국의 증치세 관련

1

“완전히 경외에서 소비”란 무슨 의미인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에 의한 증치세 과세대상은 중국 경내에서 판매되는 서비스, 무형자산 및 유형자산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경내에서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①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경내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판매
- ②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경내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사용하는 무형자산을 판매
- ③ 경외의 기업 또는 개인이 경내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완전히 경외에서 사용하는 유형동산을 임대

여기서 완전히 경외에서 발생(사용)한다 함은, 해당 서비스(예시: 전시회, 창고저장 등)가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혹은 해당 무형자산(예시: 특허 또는 비특허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경내의 기업 또는 개인이 경외 소재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관련법령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제1조 및 제13조

2

2018년 4월 30일 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간이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일반납세자가 2018년 4월 30일 전에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일반계세방법과 간이계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계세방법은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간이계세방법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한 값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에 일반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은 간이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높다.

따라서 간이계세방법을 적용할 경우, 일반납세자라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서 건물 임대인 경우 일반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은 9%이고, 간이계세방법에 적용되는 세율은 5%이다.

관련법령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첨부2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제1조 9항

3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각각의 장 단점은 무엇인지?

(1)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의 기준

기준	일반납세자	소규모납세자
연간 매출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구분 없이 500만원 초과 • 세무신고 매출액, 조사조정 매출액, 납세 평가조정 매출액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구분 없이 500만원 이하(500만원 포함) • 세무신고 매출액, 조사조정 매출액, 납세 평가조정 매출액 포함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기준 미달, 단 회계결산이 온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의 제공이 가능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자연인) • 소규모납세자를 선택하여 납세하길 원하는 납세자

(2)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일반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증치세 공제 가능, 초과부분 이월공제가 가능 • 수출화물 증치세 퇴세 가능 •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매출총이익이 높을 경우) 세액이 큼 • 납세신고절차가 소규모납세자보다 복잡함
소규모납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세율(3%) • 제품 구매 시 지불한 증치세는 제품 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표준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증치세 공제 불가 • 수출재화 증치세 퇴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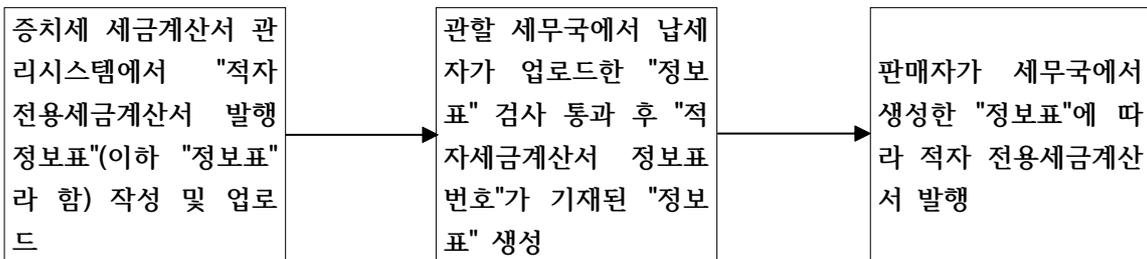
관련법령

- ▶ 증치세잠행조례 제13조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28조
- ▶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재세[2018]33호) 제1조

4

적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지?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반품, 세금계산서 발행 오류는 과세대상 서비스 종료, 매출에누리 발생 등 정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적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정보표" 작성 및 업로드 방법:

"정보표" 작성자	매입세액 공제 신고 여부	작성 사항 상세
구매자	기신고	1) 시스템에서 "정보표" 작성 2) 대응되는 흑자 전용세금계산서 정보는 기재 안함 3) "정보표" 상의 증치세 세액에 따라 당기 매입세액 잠정 전출 4) 판매자가 발급한 적자 전용세금계산서 취득 후, "정보표"와 함께 증빙으로 사용
구매자	신고하지 않았으나, 계산서페이지와 공제페이지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상기 2)번의 흑자 전용세금계산서 정보 기재, 나머지 부분은 상동.
판매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전용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공제신고에 사용하지 않고 계산서페이지와 공제페이지를 반환한 경우	1) 시스템에서 "정보표" 작성 2) 대응되는 흑자 전용세금계산서 정보 기재

관련법령

▶ <적자 증치세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47조)

5

해외로 기술지원 서비스비용 지불 시, 송금금액이 5만불 이하면 증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중국 경내 기업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술지원 서비스비용을 지불할 경우, 송금 금액과 상관없이 대금지급인이 증치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서비스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며, 매회지급 또는 만기지급 시 지급대금 또는 만기지급대에서 원천징수한다.

상기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건당 USD50,000 이하의 금액을 해외로 지불할 경우 은행에 관련 세액납부증빙의 제출 없이도 결제를 처리할 수 있지만, 건당 USD50,000를 초과하는 지불의 경우 중국의 지급인 관할 세무기관에 세무신고(공장을 날인한 계약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의 복사본 및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등록표>,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사항통지서> 제출)를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득한 신고서류를 지불은행에 제출하여야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당 USD50,000 이하의 금액을 해외로 지불할 경우에는 증치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급인은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 세금을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제1조 및 제10조
- ▶ <서비스무역 등 항목 대외지불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40호) 제1조 및 제2조

6

총공사와 분공사간의 증치세 이슈

총공사인 A사는 천진에 소재하고 주로 생산, 창고관리, 판매 등 기능을 수행하고 A사의 분공사인 B사는 북경에 소재하고 주로 재무관리, 시장조사와 판매 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B사는 독립적으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A사에서 B사의 총공사와 분공사를 통합하여 장부를 기록(“통합결산”)하고 있다. 고객과의 거래 시 A사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고객에게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A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다. 이때 B사는 소재지역인 북경에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2개 이상의 분공사를 운영하여 “통합결산”을 하는 납세자가 재화를 총공사에서 분공사로 이송하여 “판매할” 경우, 분공사와 총공사가 동일한 시에 소재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간주매출로 처리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할 경우”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1) 재화를 이송받는 분공사가 구매자에게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 (2)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따라서 B사는 북경에서 증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분공사의 증치세를 소재지역이 아닌 총공사에서 통합하여 납부할 경우 관할 세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통합결산을 하는 분공사가 실제 소재지역에서 고객개발, 연구개발 또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주체로 간주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국에서 증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관련법령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4조 3항
- ▶ <기업의 소속기구간 화물이송에 대한 증치세 징수에 대한 통지>(국세발[1998]137호)
- ▶ <증치세잠행조례> 제22조 1항



이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가?

일부 특정산업에 종사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신용등급이 A급 또는 B급인 회사만 가능)의 이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이월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일부 특정산업에는 장비제조 등 선진제조업과 연구개발 등 현대서비스업, 전력망기업을 포함한다. 본 정책은 2018년에 발표된 것으로, 그 배경은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후 여러가지 증치세 세율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산업, 투자초기 기업에는 이월매입세액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회사설립 초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초기투자(설비 구매, 공장 건설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회사의 자금을 대부분 점용하고 있다.

$$\text{환급가능세액} = \text{신설 시점 전기까지의 이월매입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 1) 2014년 12월 31일 이전(포함)에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의 환급비율은 2015년·2016년·2017년 3년간 이미 공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세금완납증명서에 기재한 증치세액이 동기 전체 기공제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2) 2015년 1월 1일 이후(포함)에 세무등기를 한 납세자의 환급비율은 실제경영기간 내에 이미 공제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세금완납증명서에 기재한 증치세액이 동기 전체 기공제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전체 기공제매입세액 =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세금완납증명서, 농산품 구매증빙, 농산품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세금계산서, 도로/교량 통행료” 상 기재된 매입세액

| 2018년 증치세 기말이월공제세액 환급업종목록 |

번호	업종명칭
1	화학원료와 화학제품 제조업
2	제약업
3	화학섬유제조업
4	비금속광물제품업
5	금속제품업
6	통용설비제조업
7	전용설비제조업
8	자동차제조업
9	철도, 선박, 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 제조업
10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11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12	계측기/측정기 제조업
13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14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업
15	연구 및 시험발전
16	전문기술서비스업
17	과학기술 보급 및 응용서비스업
18	생태보호 및 환경정비업

관련법령

▶ 2018년 일부 업종의 증치세 이월공제세액 환급 관련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 (2018) (재세[2018]70호)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 손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출해야 하는지?

증치세잠행조례에 의거, 아래 항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1)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구매 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 (2) 비정상손실의 구매화물 및 관련 과세대상노무
- (3) 비정상손실의 재공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 (4)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이 규정한 납세인 자가사용 소비품
- (5) 상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화물의 운송비용과 면세화물 판매의 운송비

여기서 말하는 “비정상손실”이란, 관리부진으로 도난·분실·곰팡이변질이 초래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부동산에 법에 따른 몰수·소각·철거가 초래되는 경우를 말한다.

화재의 경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자연재해에 속하기 때문에 상기 비정상손실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재고손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출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

- ▶ <증치세잠행조례> 제10조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및 영업세잠행조례실시세칙 수정에 대한 결정>(재정부, 국가세무총국령 제65호) 제24조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제28조 3관



9 사용했던 고정자산 판매 시 증치세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용했던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구매일자 및 취득 시 공제여부에 따라 증치세의 계산방법은 다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판매 고정자산 취득 시기 및 공제여부	일반납세자 증치세 세액 계산
1	2009년 1월 1일 이후 구매 또는 자가제조	매출액=세금포함 매출액/(1+13%) 납부할 증치세=매출액×13%
2	2009년 1월 1일 이전 구매 또는 자가제조하고 회사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을 경우	
3	2009년 1월 1일 이후 구매 또는 자가제조, 하지만 아래 원인으로 인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아직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 비증치세과세대상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또는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구매 화물 또는 과세대상노무 (2) 비정상손실의 구매화물 및 관련 과세대상노무 (3) 비정상손실의 재공품, 완제품에 소모된 구매화물 또는 과세대상 노무 (4)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문이 규정한 납세인 자가사용 소비품 (5) 상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화물의 운송비용과 면세화물 판매의 운송비	매출액=세금포함 매출액/(1+3%) 납부할 증치세=매출액×2% (3% 징수율에 2%로 감면세율로 징수) 소규모납세자와 동일
4	2009년 1월 1일 이전 구매 또는 자가제조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령

- ▶ <증치세 징수율 간소합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36호)
- ▶ <증치세 징수율 통합에 관한 통지>(재세[2014]57호)
- ▶ <증치세 개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8]170호)
- ▶ <일부 재화에 대한 저세율 적용 및 간이방법 징수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09]9호) 제2조



임차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지?

우선, 사무실 임차 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용도에 따라 전액 공제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1.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한 사무실을 아래 두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하다.

(1) 일반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하는 항목에 사용

(2) 일반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하는 항목에 사용하는 동시에 간이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하는 항목 또는 증치세 면세항목 또는 단체복리나 개인소비에 사용하는 경우

2.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임차한 사무실을 간이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하는 항목 또는 증치세 면세항목 또는 단체복리나 개인소비에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차한 사무실의 인테리어비용의 경우, 임대료와 달리 상기 1의 (2)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없으며, 임대 사무실을 일반계세방법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하는 항목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 <임차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대한 통지(2017)>(재세[2017]90호)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을 전면적으로 실시함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11

고객회사의 상품 구매수량 또는 구매금액에 따라 고객회사에 이윤을 반환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판매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 판매가 이루어진 뒤 상품 공급업체가 고객회사에게 거래 수량 또는 매출액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가격우대 또는 보상 행위에 대하여, 상품 공급업체는 고객회사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적자(-)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고객회사는 상품을 구매하고 구매 수량 또는 구매액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로서,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각종 보상 수입에 대해서는 증치세 매입세액을 전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상업기업이 화물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일부 비용의 유전세 징수에 대한 통지>(국세발[2004]136호)
- ▶ <납세인의 할인행위 관련 적자(-)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합[2006]1279호)

12

중국법인이 해외에 보증금 송금 시 원천징수세 발생 여부?

증치세잠행조례 및 기업소득세법에 의하여, 위약금은 증치세와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보증금과 같이 과세행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면 증치세와 기업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중국법인이 해외로 보증금을 송금할 경우 원천징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추후 중국법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해외법인이 기 수취한 보증금에서 배상금/위약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경우, 배상금/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치세, 기업소득세, 증치세의 부가세 등 원천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 증치세 잠행조례 제6조
- ▶ 기업소득세법 제6조
- ▶ <복건설진맥주유한공사(福建雪建啤酒有限公司)가 수취한 경영보증금의 증치세 징수 문제에 대한 질의회신>(국세함[2004]416호)

VIII. 중국의 자산투자 및 구조조정 관련

13

기업 청산으로 인하여 기업이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지불하는 일회성 경제보상금에 대하여, 해당 직원은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납부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13년 근속자의 경제보상금이 70,000위안일 경우 소득금액 및 세율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개인이 노동계약해지로 취득한 일회성 경제보상금수입은 "급여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일회성으로 취득한 경제보상금수입의 금액이 비교적 크고 해임된 인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이 취득한 일회성 경제보상금수입을 일회에 취득한 수개월의 급여소득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일정한 기간 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평균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현지 직전 년도 직원 평균 급여(사회보험 관리국 공시)를 기준으로 일회성 경제보상금수입이 기준 미달 시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고, 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경우	개인소득세 납부여부	계산방법
보상금 ≤ 현지 직전년도 직원평균 급여 × 3	개인소득세 면제	-
보상금 > 현지 직전 년도 직원평균 급여 × 3	"급여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 납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 보상금 - 현지 직전년도 직원평균 급여 × 3 납부할 개인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세율은 아래 종합소득 세율 적용)

따라서 상기 예 중 보상금을 지급받는 개인의 13년 근속 경제 보상금이 70,000위안이고, 현지 직전년도 직원 평균 급여를 3배를 60,000위안으로 가정할 경우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begin{aligned} \text{개인소득세 과세표준} &= 70,000 - 60,000 = 10,000\text{위안} \\ \text{납부할 개인소득세}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속산공제수} \\ &= 10,000 \times 3\% - 0 = 300\text{위안} \end{aligned}$$

| 개인소득세 세율표(종합소득) |

급수	연간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세율(%)
1	36,000위안 미만	3	0
2	36,000 ~ 144,000위안 사이	10	2,520
3	144,000 ~ 300,000위안 사이	20	16,920
4	300,000 ~ 420,000위안 사이	25	31,920
5	420,000 ~ 660,000위안 사이	30	52,920
6	660,000 ~ 960,000위안 사이	35	85,920
7	960,000위안 이상	45	181,920

관련법령

▶ <개인소득세법 개정 이후 우대정책의 연결 문제에 대한 통지(2018)>(재세[2018]164호)
제5조 1항

14

외국 개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환경 및 적자누적으로 회사를 청산하고 철수하고자 하는데, 청산 후 투자자가 배분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기업 전체 자산의 실현가능가액 또는 거래가격에서 청산비용과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와 법인정보상금을 차감하고 청산소득세 및 이전년도 체납세금 등 세금을 정산한 후, 기업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청산잔여자산을 계산한다.

$$\text{청산잔여자산} = \text{기업 전체 자산의 실현가능가액 또는 거래가격} - \text{청산비용} - \text{직원급여 및 사회보험료, 법적보상금} - \text{청산소득세} - \text{이전년도 체납세금} - \text{채무상환}$$

우선 청산잔여자산을 배당소득과 그 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1) 배당소득

피청산기업의 주주가 취득한 청산잔여자산금액 중, 피청산기업 누계미배당이윤과 누계이익잉여금 중 해당 주주가 점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부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 외국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은 개인소득세 면제대상이다.

(2) 배당소득 외의 부분

잔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차감한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또는 미달하는 부분은 주주의 투자양도 소득 또는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잔여자산에서 배당소득을 차감한 잔액이 주주의 투자원가를 초과하여 투자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주주(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 해당됨)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text{납부할 개인소득세} = \text{투자양도소득} \times \text{세율}(20\%)$$

관련법령

- ▶ <기업청산업무 기업소득세처리 및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8]164호) 제3조 및 제5조
- ▶ <개인소득세 몇가지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자[1994]20호) 제2조

외상투자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중국의 상무부(商务局)에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에 대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 (1)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10/7을 초과할 수 없음
- (2) 등록자본금이 210만 달러 이상 및 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3) 등록자본금이 500만 달러 이상 및 1,2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2.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4) 등록자본금이 1,2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투자총액은 등록자본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한국 모회사로부터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 범위 내에서 대여할 수 있다.

허나, 2021년부터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실시되면서 모든 외자기업과 내자기업의 표준화가 일치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비율을 별도로 나눌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수적으로 볼 때 우선 설립 할 해당 지역의 정부기관에 확인 후 투자총액과 자본금 비율을 별도로 나눌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필요 하다.

관련법령

- ▶ <외자기업 심사비준 관리작업에 대한 통지>(상자합[2014]314호) 제1조
- ▶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에 대한 집행규정>(공상기재[1987]제 38호) 제3조
- ▶ <외상투자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26호

16

사업양수도 시, 연루되는 유형재화의 경우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13호에 의거, 납세인이 자산구조개편 과정에서 합병·분할·판매·교환 등의 방식으로 전체 또는 일부의 실물자산 및 관련되는 채권과 채무 및 노동력을 함께 기타 단위와 개인에 양도할 경우, 증치세 과세대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관련되는 재화의 양도에 대해 증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자산구조개편 관련 증치세 규정은 상기 규정 외에 다른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또 상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증치세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가 적다.

따라서 상기 규정을 실제 적용 시, 지역 세무당국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 전에 소재 지역이 상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관련법령

▶ <납세인 자산구조개편 관련 증치세 문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13호)

설비와 건물로 출자하는 경우 관련 세금은 아래와 같다.

(1) 증치세

- 1) 설비: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에 따라 자가 생산, 위탁 가공 또는 외부로부터 구매한 설비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 2) 건물: 현물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업소득세

거주자기업이 비화폐성자산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균등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투자 후 5년 내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기 행위가 발행하는 해에 일회성으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 출자행위가 특수성세무처리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특수성세무처리의 적용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증치세

건물에 투자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토지증치세를 잠정 징수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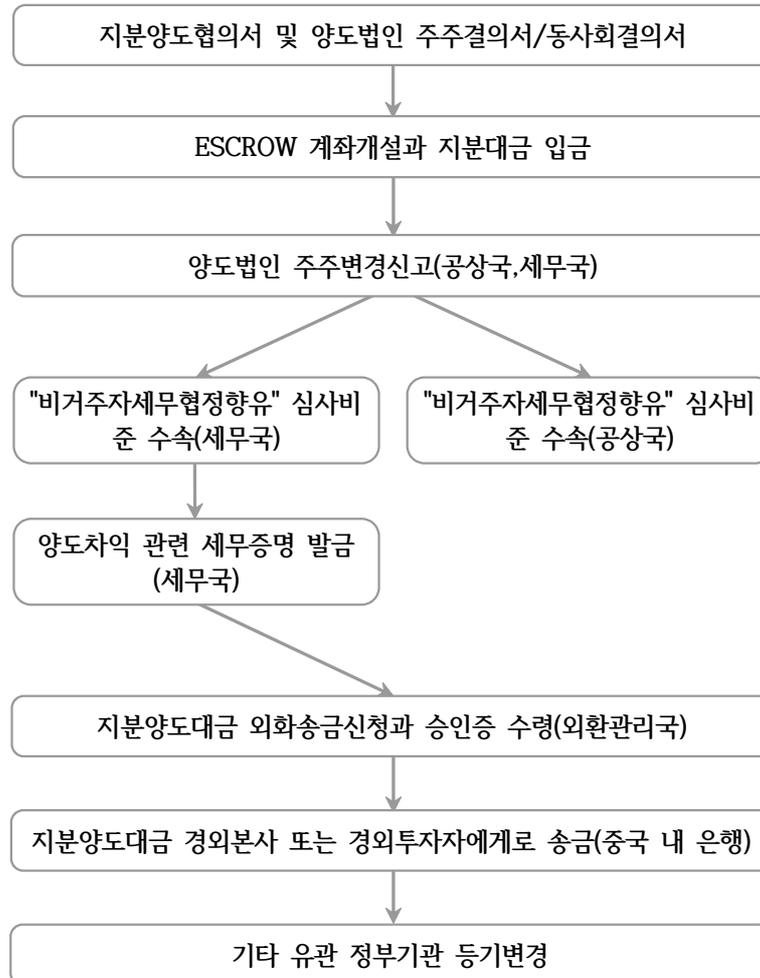
- ▶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4조
- ▶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시범 실시방법>(재세[2016]36호) 제10조, 제11조
- ▶ <비화폐성자산 투자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4]116호)제1조, 제4조
-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처리 및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9]59호)
- ▶ <구조조정 관련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4]109호)
- ▶ <구조조정 시 토지증치세 세수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5]5호) 제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수 및 기타 사유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등기를 말소하기 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국에 세무등기말소를 우선 신고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등기말소 신청서>
2. <세무등기말소 세무 청산 신청 심사비준표 >
3. <세무등기말소 세금계산서 청산 신청 심사비준표>
4. <세금계산서 구매 기록부> 및 사용하지 않은 공백 세금계산서,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원본
5. 영업집조 정보 및 등본의 원본
6. 상급 주관 부문 비준문서 또는 동사회결의(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는 총기구에서 중지할 것에 동의하는 관련 결의), 주주결의
7. 인민법원에서 파산철차를 종결한 민사판정서 원본 및 사본있을 시)
8. 영업집조 취소증명(있을 시)
9. 납세신고 USB

상기 자료는 규정상 제출해야 하는 자료 목록이고, 구체적인 요청자료는 지역별 세무국 및 세무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 지분양도 절차



- 외국주주들간의 매매는 중국에서 외환송금절차가 없어서 업무흐름이 비교적 간단함
- 이론적인 절차와 실무적 절차가 다를 수 있음(예: 우선 지분양도관련 세금신고 진행 후 공상국 변경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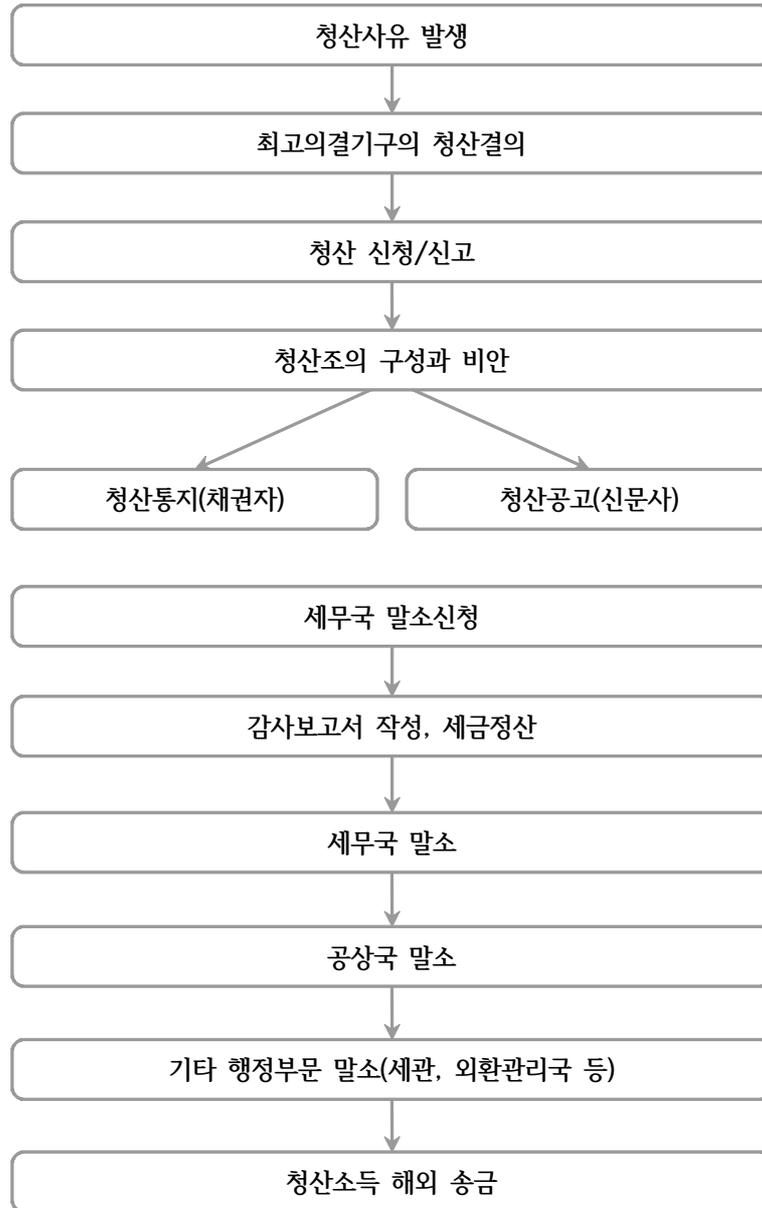
(2) 합병 절차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게 이전하고 피합병법인은 사실상 청산절차로 진행 한다.

| 흡수합병의 업무흐름 (A 존속, B 소멸) |

절차	비고
[Step 1]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소멸하는 회사의 기존 심의비준기관 • 신청자: 소멸하는 회사
[Step 2] 합병 심의비준 初審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합병하는 회사의 소재지 심의비준기관 • 신청자: 합병하는 회사
[Step 3-1] 채권자 통지 및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지: 상무부문 초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공고: 상무부문 초심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성급 이상 신문 1회 공고 ※ 통지 및 공고에는 채권채무승계방안을 고지 ※ 채권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신문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채무승계방안 수정, 채무상환, 담보제공을 요구 가능
[Step 3-2] 피 합병법인 청산	B시 세무국, 세관, 공상국 등 유관 부처로부터 상술 청산절차 진행.
[Step 4] 합병 심의비준 最終審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 A시 공상국 • 신청자: 합병하는 회사
[Step 5] <비준증서> 변경 및 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하는 회사는 피 합병법인의 자산/채권/채무/인력 인계 • 소멸하는 회사는 기존 심의비준기관에 비준증서 말소신청 후 말소
[Step 6] 채권 및 채무자 변경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피 합병법인 영업집조 말소 후 30일 이내 • 대상자: 소멸하는 회사의 채권자 및 채무자 • 통지내용: 채권자 및 채무자 변경사항 • 통지방법: 서면통지, 성급 이상 신문에 1회 공고
[Step 7] 각종 등기변경 및 말소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하는 회사는 자산(부동산), 인력 등 유관부문에 등기변경을 신청

(3) 청산절차



청산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중국 투자법인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회사 규모, 경영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은 상이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각 방안별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단점
지분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양도로 인하여 법률/세무상의 제반위험이 지분양수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법인이 위험을 청산할 수 있음 • 지분양도에는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며, 기타 유통세(증치세) 부과를 회피할 수 있음 • 소요기간 짧음 • 행정절차가 간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가 매도자의 민사, 세무이슈, 채무 등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위험회피를 위하여 지분양도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업원 정리해고 및 부실자산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청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와 매도자간 법적 책임 명확 • 양수인이 없어도 회사가 임의로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간(6개월~2년) • 행정절차가 복잡함 • 잠재적인 세무이슈 사항이 드러남 • 종업원과의 노동분쟁 발생 가능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산잔액, 인력, 자산, 채권/채무 등 모두 합병법인으로 이관되어 사업지속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가 복잡(자산양도+청산) • 향후 지분양수도 기회가 발생할 경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종업원과의 노동분쟁 발생 가능 • 잠재적인 세무이슈 사항이 드러남

따라서 위험감소와 절차 측면에서 볼 때 합병보다 청산이, 청산보다 지분양도가 최적화된 방안이다.

21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지
여?

규정상,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에 의하여 개업 후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여 휴업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 될 경우 공상국(시장감독관리국)에서 영업집조를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는 위험은 존재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0신고를 하더라도 세무신고를 적시에 진행하고 매년 연합연검(공상국, 상무국, 세무국, 재정국 등 기관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보고하는 절차)을 진행하며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가 있다면 영업집조가 취소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관련법령

- ▶ 회사법 제211조
- ▶ 회사등기관리조례 제68조